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사회복지 세항:(2313)가정복지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2000 사회개발비		51,970,705	45,008,462	6,962,243	[국 21,534,013 시 16,346,946 구 14,089,746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2300 사회보장비		51,970,705	45,008,462	6,962,243	[국 21,534,013 시 16,346,946 구 14,089,746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2310 사회복지		51,970,705	45,008,462	6,962,243	[국 21,534,013 시 16,346,946 구 14,089,746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2313 가정복지		51,970,705	45,008,462	6,962,243	[국 21,534,013 시 16,346,946 구 14,089,746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100 경상예산		398,633	937,435	△538,802	[국 48,484 시 0 구 350,149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110 인건비		48,484	645,148	△596,664	[국 48,484 시 0 구 0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	101 인건비	48,484	645,148	△596,664	
		48,484	645,148	△596,664	10 일시사역인부임 ○노인일자리일시사역인부임 (경정)0 - (기정)645,148,000 = △645,14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322,574 = △322,574 (시) 0 - 322,574 = △322,574 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48,484 (국) 48,484 ㅇ아동생활 환경조사 30,700 x 10명 x 12일 = 3,684 (국) 3,684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ㅇ서비스(보조)조정자 인부임 = 40,500 (국) 40,500
					ㅇ서비스(보조)조정자 4대보험 = 4,300 (국) 4,300
120 경상적경비		350,149	292,287	57,862	
	201 일반운영비	207,294	170,597	36,697	
		202,294	165,597	36,697	01 일반운영비 ○예산절감 (경정)165,597,000 x 90% - (기정)165,597,000 = △16,559 ○북구 노인복지센터 운영 = 12,000 ○신안동경로당 임차료 = 30,000 ○문화어린이집 임차료 = 11,256
	202 여비	30,960	24,960	6,000	
		6,000	0	6,000	03 국외여비 ○여성이행복한고을 우수기관('06 특별교부세) 6,000 ㅇ여성정책유공자 해외연수 = 6,0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307 민간이전	68,815	53,650	15,165	
		62,315	47,150	15,165	02 민간경상보조 ○경로당 백미지원 (경정)45,315,000 - (기정)30,150,000 = 15,165
200 사업예산		51,572,072	44,071,027	7,501,045	[국 21,485,529 시 16,346,946 구 13,739,597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210 보조사업		50,310,920	44,051,027	6,259,893	[국 21,485,529 시 16,346,946 구 12,478,445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	201 일반운영비	31,911	0	31,911	
		31,911	0	31,911	01 일반운영비 ○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운영비 = 5,895 (국) 4,126 (시) 1,769 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26,016 (국) 26,016 ㅇ아동환경 조사 = 1,500 (국) 1,500 ㅇ아동환경 조사서 1,600 x 500부 = 800 (국) 8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ㅇ업무추진 급량비 5,000 x 4명 x 15일 x 3월 = 900 (국) 900 ㅇ지원센터 운영비(공공요금,토너,복사지 등) = 18,616 (국) 18,616 ㅇ운영위원회 운영수당 70,000 x 15명 x 4회 = 4,200 (국) 4,200
	202 여비	9,000	0	9,000	
		9,000	0	9,000	01 국내여비 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9,000 (국) 9,000 ㅇ기본업무수행 여비 20,000 x 8명 x 12회 x 3월 = 5,760 (국) 5,760 ㅇ사업교육 등 관외여비 = 3,240 (국) 3,240
	206 재료비	0	45,650	△45,650	○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 (경정)0 - (기정)45,650,000 = △45,65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22,825 = △22,825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시) 0 - 22,825 = △22,825
	301 일반보상금	7,615,322	6,751,743	863,579	
		7,572,322	6,751,743	820,579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○경로연금 (경정)2,386,970,000 - (기정)2,282,999,000 = 103,97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670,879 - 1,610,000 = 60,879 (시) 501,264 - 483,000 = 18,264 (구) 214,827 - 189,999 = 24,828 ○노인교통수당 (경정)4,540,520,000 - (기정)4,162,712,000 = 377,80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2,270,260 - 2,153,712 = 116,548 (구) 2,270,260 - 2,009,000 = 261,260 ○입양아동양육수당 (경정)454,800,000 - (기정)96,000,000 = 358,8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18,360 - 67,200 = 251,160 (시) 136,440 - 28,800 = 107,640 ○국내입양장려금(입양수수료) (경정)0 - (기정)20,000,000 = △2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국) 0 - 14,000 = △14,000 (시) 0 - 6,000 = △6,000
		28,000	0	28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28,000 (국) 28,000 ㅇ가족역량 강화캠프 = 20,000 (국) 20,000 ㅇ부모,지역사회참여자 전문교육 = 5,000 (국) 5,000 ㅇ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급식 = 3,000 (국) 3,000
		15,000	0	15,000	12 기타보상금 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15,000 (국) 15,000 ㅇ영유아, 아동 프로그램 운영비(교구 및 도서지원) = 10,000 (국) 10,000 ㅇ방문보건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= 5,000 (국) 5,0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307 민간이전	39,974,445	37,079,224	2,895,221	
		250,112	191,387	58,725	01 의료및구료비
					○노인건강진단(이양) (경정)9,862,000 - (기정)7,637,000 = 2,225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8,194 - 5,969 = 2,225 (구) 1,668 - 1,668 = 0
					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56,500 (국) 56,500
					ㅇ임산부, 영유아 영양지원 = 10,000 (국) 10,000
					ㅇ통합방문 보건서비스 = 9,000 (국) 9,000
					ㅇ발달검사 및 의료비지원 = 7,500 (국) 7,500
					ㅇ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진단 = 30,000 (국) 30,000
		35,869,966	33,097,847	2,772,119	02 민간경상보조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보육시설운영비(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99,609천원)
					2,274,596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16,793,698 - 16,806,400 = △12,702
					(시) 8,396,849 - 8,403,200 = △6,351
					(구) 7,196,849 - 4,903,200 = 2,293,649
					ㅇ종사자인건비
					(경정)6,950,608,000 - (기정)6,950,608,000 = 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3,475,304 - 3,475,304 = 0
					(시) 1,737,652 - 1,737,652 = 0
					(구) 1,737,652 - 1,737,652 = 0
					ㅇ민간시설 교재교구비
					(경정)204,668,000 - (기정)158,501,000 = 46,167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102,334 - 102,334 = 0
					(시) 51,167 - 51,167 = 0
					(구) 51,167 - 5,000 = 46,167
					ㅇ차량운영비
					(경정)4,800,000 - (기정)4,800,000 = 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2,400 - 2,400 = 0
					(시) 1,200 - 1,200 = 0
					(구) 1,200 - 1,200 = 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ㅇ민간시설영아반지원 (경정)4,243,512,000 - (기정)3,187,634,000 = 1,055,87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,121,756 - 2,121,756 = 0 (시) 1,060,878 - 1,060,878 = 0 (구) 1,060,878 - 5,000 = 1,055,878 ㅇ저소득층 보육료 637,814 ·법정저소득층 보육료(1층) (경정)2,598,596,000 - (기정)2,598,596,000 = 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299,298 - 1,299,298 = 0 (시) 649,649 - 649,649 = 0 (구) 649,649 - 649,649 = 0 ·차상위층 보육료(2층) (경정)6,447,058,000 - (기정)6,447,058,000 = 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,223,529 - 3,223,529 = 0 (시) 1,611,764 - 1,611,764 = 0 (구) 1,611,765 - 1,611,765 = 0 ·차차상위층 보육료(3층) (경정)2,633,826,000 - (기정)2,633,826,000 = 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316,913 - 1,316,913 = 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시) 658,457 - 658,457 = 0 (구) 658,456 - 658,456 = 0 · 차차차상위층 보육료(4층) (경정)1,678,448,000 - (기정)1,478,314,000 = 200,134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839,224 - 839,224 = 0 (시) 419,612 - 419,612 = 0 (구) 419,612 - 219,478 = 200,134 · 차차차차상위층 보육료(5층) (경정)1,770,720,000 - (기정)1,333,040,000 = 437,68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885,360 - 885,360 = 0 (시) 442,680 - 442,680 = 0 (구) 442,680 - 5,000 = 437,680 ㅇ무상보육료(만5세아, 장애아) (경정)4,834,396,000 - (기정)4,552,475,000 = 281,92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,017,198 - 3,031,650 = △14,452 (시) 1,508,599 - 1,515,825 = △7,226 (구) 308,599 - 5,000 = 303,599 ㅇ두자녀보육료 (경정)922,764,000 - (기정)697,073,000 = 225,69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461,382 - 461,382 = 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시) 230,691 - 230,691 = 0 (구) 230,691 - 5,000 = 225,691 ㅇ평가인증 시설지원 (경정)98,000,000 - (기정)70,875,000 = 27,125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49,000 - 47,250 = 1,750 (시) 24,500 - 23,625 = 875 (구) 24,500 - 0 = 24,500 ○장애아 · 영아전담시설 교재교구비 (경정)1,000,000 - (기정)5,000,000 = △4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500 - 2,500 = △2,000 (구) 500 - 2,500 = △2,000 ○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(경정)2,400,000 - (기정)9,600,000 = △7,2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1,200 - 4,800 = △3,600 (구) 1,200 - 4,800 = △3,600 ○보육교사처우개선비 (경정)140,400,000 - (기정)137,520,000 = 2,88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70,200 - 137,520 = △67,320 (구) 70,200 - 0 = 70,2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셋째아 보육료 지원 (경정)106,800,000 - (기정)53,400,000 = 53,4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53,400 - 53,400 = 0 (구) 53,400 - 0 = 53,400 ○지역사회시니어클럽 (경정)173,751,000 - (기정)170,000,000 = 3,75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173,751 - 170,000 = 3,751 ○경로당 여가프로그램 (경정)4,000,000 - (기정)5,000,000 = △1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4,000 - 5,000 = △1,000 ○경로당운영비 (경정)1,076,810,000 - (기정)898,364,000 = 178,446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345,946 - 167,500 = 178,446 (구) 730,864 - 730,864 = 0 ○결식 및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(경정)611,672,000 - (기정)539,822,000 = 71,85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458,754 - 458,754 = 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구) 152,918 - 81,068 = 71,850
					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60,000
					(국) 60,000
					ㅇ급식비 지원 = 15,000
					(국) 15,000
					ㅇ학령기 아동프로그램 운영비 = 25,000
					(국) 25,000
					ㅇ영유아, 아동 프로그램 운영비 = 20,000
					(국) 20,000
					○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= 11,396
					(시) 5,698
					(구) 5,698
					○무료요양시설 운영 = 90,000
					(시) 90,000
					○전문요양시설 운영 = 38,000
					(시) 38,000
		3,854,367	3,789,990	64,377	05 민간위탁금
					○차상위실비입소 이용료
					(경정)53,170,000 - (기정)158,324,000 = △105,154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7,219 - 110,827 = △73,608 (시) 15,951 - 47,497 = △31,546 ○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(경정)254,165,000 - (기정)252,932,000 = 1,233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54,197 - 52,964 = 1,233 (구) 199,968 - 199,968 = 0 ○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(경정)186,960,000 - (기정)372,480,000 = △185,52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30,872 - 260,736 = △129,864 (시) 56,088 - 111,744 = △55,656 ○차상위노인돌보미 바우처 (경정)370,184,000 - (기정)408,531,000 = △38,347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259,129 - 285,972 = △26,843 (시) 111,055 - 122,559 = △11,504 ○가정봉사원 파견사업 (경정)120,676,000 - (기정)117,268,000 = 3,40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120,676 - 117,268 = 3,408

과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노인실비주간보호시설운영 (경정)34,735,000 - (기정)33,810,000 = 925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34,735 - 33,810 = 925 ○노인일거리사업 (경정)6,475,000 - (기정)6,600,000 = △125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6,475 - 6,600 = △125 ○노인일자리사업(위탁형) (경정)856,924,000 - (기정)622,900,000 = 234,024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428,462 - 311,450 = 117,012 (시) 428,462 - 311,450 = 117,012 ○노인일자리사업개발(시니어클럽지원) = 30,000 (국) 15,000 (시) 15,000 ○결식노인무료급식소운영 (경정)569,968,000 - (기정)536,755,000 = 33,213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341,826 - 308,613 = 33,213 (구) 228,142 - 228,142 = 0 ○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배달사업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경정)175,200,000 - (기정)241,609,000 = △66,409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시) 74,414 - 79,469 = △5,055
					(구) 100,786 - 162,140 = △61,354
					○아동복지시설운영
					(경정)834,657,000 - (기정)777,430,000 = 57,227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시) 834,657 - 777,430 = 57,227
					○아동복지시설방염처리비용지원(1개소) = 7,782
					(국) 3,891
					(시) 3,891
					○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(사회적일자리)
					(경정)308,000,000 - (기정)336,600,000 = △28,6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215,600 - 277,200 = △61,600
					(시) 46,200 - 59,400 = △13,200
					(구) 46,200 - 0 = 46,200
					○지역아동센터(공부방)운영
					(경정)720,000,000 - (기정)600,000,000 = 120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(국) 360,000 - 360,000 = 0
					(시) 180,000 - 180,000 = 0
					(구) 180,000 - 60,000 = 120,0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종사자 특별수당 (경정)1,440,000 - (기정)720,000 = 720 [경정] [기정] [증감] (시) 1,440 - 720 = 720
	401 시설비및부대비	31,000	0	31,000	
		31,000	0	31,000	01 시설비 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지원센터 설치(증축 · 전기소방 · 개보수) = 31,000 (국) 31,000
	402 민간자본이전	2,623,242	174,410	2,448,832	
		2,623,242	174,410	2,448,832	01 민간자본보조 ○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(경정)60,000,000 - (기정)45,000,000 = 15,000 [경정] [기정] [증감] (국) 30,000 - 30,000 = 0 (시) 30,000 - 15,000 = 15,000 ○무료요양시설 운영 (경정)0 - (기정)129,410,000 = △129,41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시) 0 - 129,410 = △129,410 ○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= 1,552,386 (국) 776,193 (시) 776,193 ○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(이월사업) = 1,010,856
	405 자산취득비	26,000	0	26,000	
		26,000	0	26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(희망스타트)사업 장비구입 = 26,000 (국) 26,000
220 자체사업		1,261,152	20,000	1,241,152	
	401 시설비및부대비	719,652	10,000	709,652	
		711,152	10,000	701,152	01 시설비 ○효동경로당 휴식공간조성('06 특별교부금) = 20,000 ○두암1동 경로당 확충(이월사업 68,598 특별교부금80,000) = 148,598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
					○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(특별교부세)	=	32,000
					○북구 노인복지센터 사업(특별교부금)	=	48,000
					○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보수(특별교부금)	=	70,000
					○공공어린이집 등 놀이시설 설치(특별교부금)	=	202,554
					○공립보육시설 설치	=	20,000
					○북구 아동복지관 부지매입	=	150,000
					○경로당 개보수(북구청소유, 25개소) (경정)20,000,000 - (기정)10,000,000	=	10,000
		8,000	0	8,000	02 감리비		
					○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(특별교부세)	=	8,000
		500	0	500	03 시설부대비		
					○북구 노인복지센터 사업(특별교부금)	=	500
	402 민간자본이전	160,000	10,000	150,000			
		160,000	10,000	150,000	01 민간자본보조		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
					○건국동 지야경로당 신축('06 특별교부금)	=	130,000
					○양산동 청암경로당 정비(특별교부금)	=	10,000
					○경로당개보수 및 비품지원 (경정)20,000,000 - (기정)10,000,000	=	10,000
	405 자산취득비	381,500	0	381,500			
		381,500	0	381,5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		
					○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(특별교부세)	=	260,000
					○북구 노인복지센터 사업(특별교부금)	=	101,500
					○공립보육시설 설치	=	20,000
세출합계		51,970,705	45,008,462	6,962,243			